pwc

2027년도 예산안 특별판

Tax in Motion

총리 겸 재무장관이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세제 제안을 정리한 Tax in Motion 예산안 특별판입니다





주요 내용

1

세율 개정 및 인적공제 확대
중간소득 구간 세율 인하 | 본인공제 RM12,000

중간소득 납세자의 실수령액 증가, 과세소득 RM100만 이상 구간 세율 인상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2

중소·영세기업(MSMEs) 세율 인하 및 자본공제(CA) 확대
세율 14%·16% 적용, 연간 최대 RM6,000 세 부담 절감

소액자산 자본공제 기준 RM3,000으로 인상, 연간 한도 RM30,000으로 확대.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3

글로벌 서비스 허브(GSH) 및 패밀리오피스(FO) 인센티브 확대
GSH 세율 5%, SFO 최대 20년간 0%, 멀티 패밀리오피스(MFO) 모델 신설

GSH 인센티브 기간은 성과에 따라 최대 30년.
GSH 신청은 2027년 1월 1일부터

4

2030년까지 녹색투자 지원 지속
수소·해양온도차발전·전기차 충전·재생에너지에 GITA 60~100% 적용

적격 사업에는 최대 10년의 인센티브 기간을 적용.
신청 기간: 2027년 1월 1일~2030년 12월 31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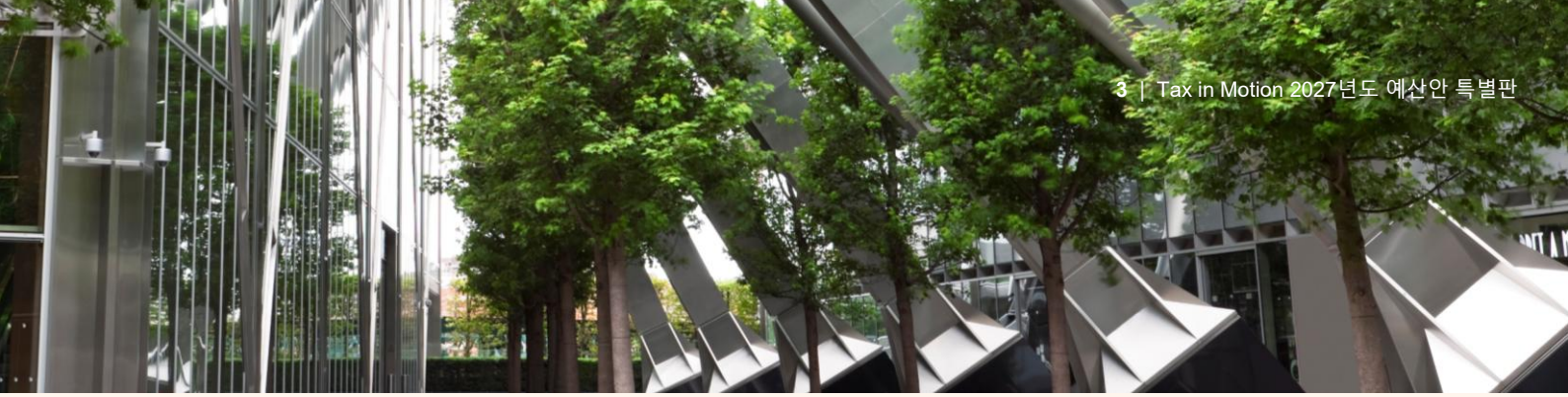
규정된 지급수단을 통한 급여 지급분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된 금융기관 및 비현금 지급수단을 통한 급여지급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

중소·영세기업(MSMEs)은 이 요건에서 제외
2028 과세연도부터 시행

6

간접세 완화로 조달비용과 요양비용 경감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유통업자에 대한 판매세 환급제도 도입

노인요양 서비스세율 6%로 인하, 연간 요양비 RM96,000까지는 면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번 호의 내용

개인소득세 4

법인소득세 11

조세인센티브 14

인지세 29

간접세 36

약어 풀이 44

01



개인소득세

~7%-12%
개인 납세자 세 부담 절감 (최대 약 RM1,400), 과세소득구간 **RM7만~RM15만**

~0.66%
개인 납세자 세 부담 절감 (약 RM1,600), 과세소득 **RM100만**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및 세율 개정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 과세소득 RM70,001~RM100,000 구간의 개인소득세율을 19%에서 18%로 인하합니다.
- 과세소득 RM100,001~RM150,000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하고, RM150,001~RM400,000 구간은 25%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과세소득이 RM100만을 초과하는 개인에게는 종전 28% 대신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현행 세율표와 개정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2026 과세연도까지)

과세소득 (RM)	세액 (RM)	초과분 세율
5,000	0	1
20,000	150	3
35,000	600	6
50,000	1,500	11
70,000	3,700	19
100,000	9,400	25
400,000	84,400	26
600,000	136,400	28
2,000,000	528,400	30

제안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과세소득 (RM)	세액 (RM)	초과분 세율
5,000	0	1
20,000	150	3
35,000	600	6
50,000	1,500	11
70,000	3,700	**18**
100,000	**9,100**	**24**
150,000	**21,100**	**25**
400,000	**83,600**	26
600,000	**135,600**	28
1,000,000	**247,600**	**30**

* 과세소득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제안된 본인공제 RM12,000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01

개인소득세

개인 인적공제

현행	제안
본인공제	
거주자 개인에 대하여 본인 및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RM9,000의 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공제액을 RM12,000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부모 또는 조부모 관련 지출	
부모 또는 조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다음 비용에 대하여 RM8,00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 • 진료비, 치과 진료비, 종합건강검진비 및 특별한 필요에 따른 비용. 각 항목은 지출액에 대한 영수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종합건강검진비는 RM1,000을 한도로 하며 예방접종을 포함합니다. • 간병비. 간병인의 서면 확인서나 영수증 또는 간병인의 취업허가서로 증빙합니다. 모든 공제 신청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의사회(Malaysian Medical Council)에 등록된 의사 또는 말레이시아 치과의사회(Malaysian Dental Council)에 등록된 치과의사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상태가 해당 치료·검진·특수 요구 또는 간병을 필요로 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제 범위를 자택·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부모 또는 조부모의 모든 요양비용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진료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공제 신청은 등록된 의사의 확인 없이 간병인의 서면 확인서 또는 취업허가서와 영수증으로 증빙합니다.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01

개인소득세

개인 인적공제

현행	제안
건강 및 복지	
다음 항목의 의료비에 대하여 RM10,000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의 중대한 질병 치료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 치료비 •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의 예방접종비. RM1,000 한도 •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의 치과 검진비 또는 치료비. RM1,000 한도 •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의 종합건강검진비, 정신건강 검진비 또는 상담비, 질병 검사비 또는 자가검사용 의료기기 구입비. RM1,000 한도 • 학습장애가 있는 18세 미만 자녀의 평가·진단비, 조기개입 프로그램비 및 재활치료비. RM10,000 한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수유용품에 대하여 RM1,000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범위를 다음 항목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RM10,000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산후조리원 또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제공하는 산후조리 서비스. RM3,000 한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구입한 수유용품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01

개인소득세

개인 인적공제

현행	제안
교육 및 직업훈련비	
개인이 지출한 다음 비용에 대하여 RM7,00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 적격 국내 교육기관 또는 전문단체의 지정 분야 고등교육 과정까지의 수강료 • 적격 국내 교육기관 또는 전문단체의 분야 제한 없는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수강료 • 「2006년 국가직업능력개발법」(N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2006)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청장이 인정한 직무능력 향상 또는 자기계발 과정 수강료. RM2,000 한도. 이 공제는 2026 과세연도까지 적용합니다. 이와 별도로 취미·어학·종교 과정과 같이 근로와 무관한 직무능력 향상 또는 자기계발 과정 수강료에 대하여 RM2,500까지 라이프스타일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를 「교육 및 직업훈련비」 공제로 재분류합니다. 전체 공제 한도는 RM7,000으로 유지하며, 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 인정 국내 교육기관 또는 전문단체에서 이수하는 분야 제한 없는 수료·전문학사·학사·석사 또는 박사 과정 • 직업능력개발청장이 인정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자기계발 TVET 과정. RM3,000 한도 • 다음 항목. RM2,000 한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와 무관한 과정·훈련·기술 또는 자기계발 강좌 – 자녀의 STEM·예술·어학 또는 종교 과정, 훈련, 강좌 또는 교습. *근로와 무관한 직무능력 향상 또는 자기계발 과정 수강료에 대한 현행 RM2,500 한도의 라이프스타일 공제는 위 「교육 및 직업훈련비」 공제로 통합합니다.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01

개인소득세

개인 인적공제

현행	제안
라이프스타일 공제 확대	
거주자 개인이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 종이 또는 전자 일간신문,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인터넷 이용료를 지출한 경우 RM2,50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의 범위를 다음 항목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AI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이용료 • 등록된 동물보호소를 통한 반려동물 입양비용 • 등록된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 및 중성화 수술 비용 라이프스타일 공제의 전체 한도는 RM2,500으로 유지합니다.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스포츠 관련 라이프스타일	
본인·배우자·자녀 또는 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다음 스포츠 관련 비용에 대하여 RM1,000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 스포츠 장비 구입비 • 스포츠 시설 이용료 또는 입장료 • 스포츠 대회 참가비 • 등록된 스포츠클럽·협회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헬스장 회원권 또는 스포츠 강습비	공제 범위를 운동화 구입비까지 확대하고 RM300을 한도로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01

개인소득세

개인 인적공제

현행	제안
SOCSO 기여금	
SOCSO 및 고용보험제도가 규율하는 사회보장 보호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하여 RM35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2017년 자영업자 사회보장법」(Self-Employment Social Security Act 2017)상 다음 3개 의무업종의 LINDUNG KENDIRI에 대한 근로자 의무 기여금까지 범위 확대 – 여객운송 – 화물 또는 음식 배송 – 노점상 • 다음에 대한 근로자 임의기여금에 RM150까지 추가 공제 적용 – LINDUNG 24 – LINDUNG KENDIRI의 비의무 17개 업종(「2017년 자영업자 사회보장법」에 열거된 업종)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01

개인소득세

개인 인적공제

공제 항목	
관광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 과세연도에 다음 입장료에 대하여 RM1,000까지 개인소득세 공제를 적용합니다. • 박물관·동물원·테마파크·국립공원·해양공원·지질공원 등 관광지. 그리고 •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장 기간** 1년 **적용 기간** 2027 과세연도



02

법인소득세

중소·영세기업(MSMEs) 소득세율 개정

말레이시아에 설립되고 거주자인 법인 또는 말레이시아 거주자인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영세기업(MSMEs)으로 분류되어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 보통주 자본금(법인) 또는 총 출자금(유한책임파트너십)이 RM250만 이하. 그리고
-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이 RM5,000만을 초과하지 않을 것.

중소·영세기업(MSMEs)의 소득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중소·영세기업(MSMEs) 소득세율			
과세소득 구간	**현행 세율**	**제안 세율**	**최대 세 부담 절감 (RM)**
최초 RM150,000	15%	**14%**	**1,500**
RM150,001~RM600,000	17%	**16%**	**4,500**
RM600,000 초과	24%	**24%**	**-**
합계			**6,000**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02

법인소득세

규정된 지급수단을 통한 급여 지급분에 대한 손금산입

현행

총수입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그 목적으로만 지출한 급여 비용은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ITA 1967 제3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제안

2028 과세연도부터, 급여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은「1955년 고용법」(Employment Act 1955)에서 정한 금융기관 및 비현금 지급수단을 통한 지급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급여 지급 거래 중 중소·영세기업(MSMEs)의 거래는 이 요건에서 제외합니다.

급여 외의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허용합니다.

(2028 과세연도부터 시행)

PwC 의견

- 이번 제안은 적용 대상인 중소·영세기업(MSMEs)의 정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다른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SME Corp의 정의를 따르는지, 납입자본금과 사업소득 총수입 기준을 적용하는 ITA 1967 제1부칙 제2A항을 따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정의의 내용이 크게 달라, 일관된 적용과 준수를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업은 2028 과세연도 시행일까지 준수 체계를 갖추도록 급여 시스템과 내부통제 및 업무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합니다.
- 급여의 범위를 EPF(종업원적립기금) 적용 임금과 일치시키는지,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02

법인소득세

현행	제안
소액자산(SVA) 자본공제(CA)	
자산별 **RM2,000** 이하인 소액자산은 자본공제를 전액 적용하며, 과세연도별 한도는 **RM20,000**입니다. 중소·영세기업(MSMEs)는 연간 총한도 없이 소액자산에 대하여 자본공제를 전액 적용받습니다.	자산별 소액자산 한도를 RM2,000에서 **RM3,000**으로 인상하고, MSMEs 외 법인의 과세연도별 한도를 RM20,000에서 **RM30,000**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03

조세인센티브

글로벌 서비스 허브(GSH) 조세인센티브

GSH 조세인센티브 개정

현행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신청 기간
• 5년 또는 10년간 5% 또는 10% 세율 • 등급별·성과 기반 방식	최고경영진(C-Suite) 직위에 고용된 비국적자 3명까지 15% 적용	2023년 10월 14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안

번호	항목	제안 내용
1.	적용 대상	• 신설 법인: GSH 또는 Principal Hub(PH) 활동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법인 • 기존 법인: 기존에 GSH 또는 PH 조세인센티브를 이미 승인받은 법인으로서, 연장 신청을 위하여 추가적인 신규 서비스를 수행하는 법인
2.	법인소득세율	• 신설 법인: GSH 소득에 5% 적용 • 기존 법인: 기준소득* 초과 시 5%, 기준소득* 이하 시 15% * 직전 3년간 평균소득
3.	인센티브 기간	• 5년 단위로 최대 30년까지 적용 가능. 단, 직전 및 이후 인센티브 적용기간의 성과 및 이행사항을 조건으로 함
4.	비과세 소득	• 재무부(MOF)가 정하는 Treasury Fund Management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
6.	Treasury Fund Management	• GSH 법인이 역내 중개기관(onshore intermediaries)을 통한 Cash Pooling을 목적으로 Treasury Fund Management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역내 중개기관을 통한 Cash Pooling: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 법인 간 외화 대출계약에 대한 인지세 100% 면제 • 위 두 가지 혜택은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 인센티브 패키지에도 적용

시행일: MIDA가 2027년 1월 1일부터 접수하는 신청 건

03

조세인센티브

해운회사 조세인센티브

소득세 비과세	
현행	**제안**
「2024년 소득세(말레이시아 선박 비과세) 명령」[P.U.(A) 184/2024]에 따라 2026 과세연도까지 말레이시아 해운회사의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며, 다음 요건을 적용합니다. • 말레이시아 선박 1척당 말레이시아 내 연간 운영비 RM250,000 이상. 그리고 • 다음 직원 중 네 명 이상과 직원의 **과반**이 **말레이시아 국적자**여야 합니다: (a) CEO, (b) 관리·재무 담당자, (c) 운영 담당자, (d) 보건·보호·안전·환경 담당자.	말레이시아 해운회사의 소득세 전액 비과세를 2036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며, 다음 요건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전략적 경영 및 실질적 지배·관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질 것;** • 말레이시아 선박 1척당 말레이시아 내 연간 운영비 RM250,000 이상. 그리고 • 말레이시아 선박 1척당 **말레이시아 국적자** 네 명 이상에게 월평균 급여 RM15,000 이상을 지급. **2027 과세연도부터 2036 과세연도까지 적용**
인지세 면제	
현행	**제안**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에는 통상 기간이 확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0.5% 또는 1.0%의 종가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2012년 인지세(면제)(제3호) 명령」[P.U.(A) 268/2012]에 따라 라부안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라부안 법인이 작성한 증서에는 인지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말레이시아 선박의 구입 또는 건조를 위한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의 인지세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대출 또는 금융액 RM1억까지는 RM2,000. 그리고 • 대출 또는 금융액 RM1억 초과는 RM5,000. P.U.(A) 268/2012에 따라 라부안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라부안 법인이 작성한 증서에는 인지세 전액 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체결하는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

03

조세인센티브

재투자공제 개정

현재 재투자공제 체계를 적용 요건과 인센티브 방식을 포함하여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더 좁히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예산안 발표에서 제안 내용의 세부 사항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일 패밀리오피스(SFO) 제도

Forest City 특별금융지구의 SFO 제도는 단일 가족이 말레이시아에서 자산을 설립·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소득에 대해 최대 20년간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주로 단일 가족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멀티 패밀리 오피스(Multi-Family Office, MFO) 모델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안

새로운 MFO 모델을 도입하여, 인가받은 펀드운용사가 승인된 SFO를 포함한 복수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PwC 의견

이번 조치는 기존 SFO 제도를 넘어 말레이시아의 자산관리 생태계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SFO 설립을 고려하지 않는 가족에게 대안적인 자산관리 구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MFO의 구체적인 정의와 현행 SFO 세제혜택이 MFO 및 인가받은 펀드운용사까지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조세인센티브

녹색기술 조세인센티브 개정

지속가능한 국가 에너지 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추어, GITA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GITA 프로젝트 (사업목적)

현행

적격 활동	GITA	기간
1등급 그린수소	적격 자본적지출(QCE) 100%를 법정소득(SI)의 70% 또는 100% 한도로 공제	최대 10년(5년+5년)
2등급 a. 통합 폐기물관리 b. 전기차(EV) 충전소	QCE 100%를 법정소득(SI)의 100% 한도로 공제	5년
3등급 a. 바이오매스 b. 바이오가스 c. 소수력 d. 지열 e. 태양광 f. 풍력	QCE 100%를 법정소득(SI)의 70% 한도로 공제	5년
(MIDA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한 신청분에 적용)		

제안

적격 활동	GITA	기간
1등급 a. 그린수소 b. 해양온도차발전	적격 자본적지출(QCE) 100%를 법정소득(SI)의 70% 또는 100% 한도로 공제	최대 10년(5+5)
2등급 a. 전기차(EV) 충전소 b. 재생에너지 설비(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소수력·지열·풍력)	QCE 60%를 법정소득(SI)의 70% 한도로 공제	5년
(MIDA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는 신청분에 적용)		

03

조세인센티브

녹색기술 조세인센티브 개정(계속)

GITA 자산 (자가소비용)

현행

적격 활동	GITA	기간
1등급 a. 재무부(MOF)가 승인한 적격자산 목록 b.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c. 친환경 건축물	QCE 100%를 법정소득(SI)의 70% 한도로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고 MGTC가 확인한 적격 GITA 자산
2등급 a. 재무부(MOF)가 승인한 적격자산 목록 b. 재생에너지 시스템 c. 에너지 효율화	QCE 60%를 법정소득(SI)의 70% 한도로 공제	

제안

적격 활동	GITA	기간
1등급 a. 재무부(MOF)가 승인한 적격자산 목록: i. 버스, 밴, 패널형 MPV, 운반차량, 터미널 트랙터, 지게차, 화물차·경트럭, 화물차 및 대형 차량(트랙터 포함) ii. 전기차 인프라, 폐기물 퇴비화·재활용 설비, 폐수 재활용 및 빗물 집수 설비. 모두 국내 생산분에 한정 b. 재생에너지 통합설비(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소수력·태양광·지열·풍력) 및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 또는 에너지저장장치	QCE 100%를 법정소득(SI)의 70% 한도로 공제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고 MGTC가 확인한 적격 GITA 자산
2등급 a. 재무부(MOF)가 승인한 적격자산 목록: i. 전기차 인프라 ii. 폐기물 퇴비화·재활용 설비 iii. 폐수 재이용 및 빗물 집수 설비 b. 재생에너지 설비(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소수력·지열·풍력)	QCE 60%를 법정소득(SI)의 70% 한도로 공제	

03

조세인센티브

샤리아 적격 펀드 운용 서비스 제공 법인 소득세 비과세

현행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가 승인한 샤리아 적격 펀드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자 법인에 대하여, 샤리아 적격 펀드 운용에서 발생한 법정소득의 60%를 다음과 같이 소득세 비과세합니다.

투자자 구분	비과세 기간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 투자자	2007 과세연도부터 2027 과세연도까지
국내 투자자	2008 과세연도부터 2027 과세연도까지
말레이시아 내 사업신탁 투자자 및 부동산투자신탁(REITs) 투자자	2014 과세연도부터 2027 과세연도까지

제안

샤리아 적격 펀드 운용 서비스를 더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 샤리아 적격 펀드 운용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세 비과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	샤리아 적격 펀드 운용에서 발생한 법정소득의 소득세 비과세율을 40%로 고정
2.	소득세 비과세를 3년간 연장
(2028 과세연도부터 2030 과세연도까지)	

03

조세인센티브

SRI 수쿠크 및 채권 보조금 제도에 따른 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현행

그린 SRI 수쿠크 발행자는 자본시장개발기금(CMDF)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에 그린 SRI 수쿠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수쿠크 발행에서 발생한 외부 검토비용의 90%를 RM300,000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는 신청분에 다음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0%로 인상하고 RM300,000까지 지원
- 적격 금융상품을 ASEAN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수쿠크 및 채권까지 확대
- 소득세 비과세를 3년간 연장

이 제안은 현재까지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제안

SRI 수쿠크·채권 보조금 제도에 따라 받은 보조금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

PwC 의견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조금 지원 비율과 한도, 적격 금융상품, 집행 기관
- 이번 제안과 2026년도 예산안 제안의 관계. 2026년도 예산안은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는 보조금 신청분에 비과세를 3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비과세에 적용되는 요건

03

조세인센티브

현행	제안
학교 공공기부기금에 대한 세무처리	
학교 공공기부기금(Tabung Sumbangan Wang Awam Sekolah, TSUWAS)은 학생 개발·복지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ITA 1967 제44조 제6항에 따라 승인된 기금이며, 교육부(MOE)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TSUWAS 기금은 **관리운영비 또는 수리·유지비를 제외합니다**. 이 기금은 학교와 외부 인사 대표로 구성된 TSUWAS 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해야 하며, 외부 인사에는 학부모교사협의회(PTA) 대표가 포함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TSUWAS에 현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합산소득의 10%까지 손금에 산입합니다. 현물 기부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운영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학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TSUWAS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운영비, 수리·유지비, 장비 구매 및 학생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합니다**. TSUWAS 설립 신청은 교육부(MOE)의 승인을 받아 IRB에 제출해야 합니다. TSUWAS는 학교와 PTA 또는 **동창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교육부(MOE)가 감독합니다**. 세부 사항은 앞으로 발표될 지침에 따릅니다.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03

조세인센티브

현행	제안
Sukuk Prisma 발행비용 소득세 손금산입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는 지속가능·책임투자(SRI) 수쿠크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체계로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하고 저탄소 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SRI 수쿠크 발행비용은 2016 과세연도부터 2027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손금에 산입합니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는 2027년부터 Sukuk Prisma를 도입합니다. 자본시장 활용을 넓혀 지속가능성 중심 투자를 유치하려는 취지입니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는 5년간 최대 RM1,000억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 사업에 다음 분야를 포함하여 자금을 공급합니다. i. 기후변화 적응 ii. 물·식량 안보 iii. 생물다양성 회복력 iv. 블루 이코노미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혁신적인 샤리아 적격 금융수단을 제공하여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수쿠크 투자 거점으로 더 강화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가 승인·인가하거나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에 등록한 Sukuk Prisma의 발행비용을 소득세 손금에 산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027 과세연도부터 시행)

03

조세인센티브

손금산입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상환한 PTPTN 학자금 대출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PTPTN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금액을 2년간 손금에 산입하되, 다음 요건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i. 고용주는 자신이 상환한 PTPTN 학자금 대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ii.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여야 하며

iii. 근로자는 사업주가 아니고 고용주와 친족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한 금액에 시행)

PwC 의견

종전에는 고용주에게 같은 조세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근로자 단계에서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안에서도 근로자에게 같은 비과세 처리를 적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조세인센티브

손금산입(계속)

Bakat MADANI 훈련 프로그램

Bakat MADANI는 6개 정부 연계 투자회사와 Petroliam Nasional Berhad(PETRONAS), 정부 연계 기업 네트워크의 참여로 출범하였습니다. 청년 25,000명에게 훈련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민간기업 참여를 포함하여 신규 일자리 30,000개를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민간기업 참여를 넓히기 위하여, Bakat MADANI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법인에 손금산입을 적용합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29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립대학 기부금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공립대학교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기부금을 합산소득의 10%까지 손금에 산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시행일 미발표)

PwC 의견

이 공제가 별도 한도를 가진 새로운 손금산입인지, 국립대학 현물 기부도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조세인센티브

손금산입(계속)

「Dapur Siswa MADANI」프로그램 식품 및 장비 기부 비용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Dapur Siswa MADANI」프로그램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자에게 기부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시행)

PwC 의견

다음 사항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 기부금에 한도를 두는지 여부.

b) 모든 기부자가 제안된 손금산입을 적용받는지 여부.

c) 기부 내역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03

조세인센티브

손금산입(계속)

국내 자동차 협력업체의 Automotive Hi-Tech Valley 이전 비용

완전 내국자본 자동차 부품업체가 페락주 Tanjong Malim의 Automotive Hi-Tech Valley로 사업장을 이전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적격 이전비용을 RM500만까지 손금에 산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027 과세연도부터 2030 과세연도까지 시행)

PwC 의견

다음 사항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완전 내국자본」의 의미. 모든 소유 단계에서 말레이시아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하는지 직상위 주주 단계만 보는지, 최종 실질소유자까지 추적하는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또는 기준기간이 언제인지를 포함합니다
- 손금산입 대상인 「적격 이전비용」의 정의

03

조세인센티브

인센티브 연장

다음은 연장이 발표된 조세인센티브 요약입니다.

조세인센티브 항목		
1.	**국제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및 무역 전시회 개최** 국제적 수준의 국내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또는 무역전시회를 개최하는 국내 설립 법인 또는 국내 등록 협회·단체에 대하여 법정소득을 전액 소득세 비과세합니다. 관광예술문화부의 확인을 받은 연간 외국인 참가자 수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센티브 관광: 1,500 • 국제회의: 2,000 • 무역전시회: 3,000 이 조세인센티브는 2026 과세연도와 2027 과세연도에 적용합니다.	**연장 기간** 3년 **적용 기간** 2028 과세연도부터 2030 과세연도까지
2.	**기계장치 및 ICT 장비 자본적지출 가속자본공제(ACA)** 다음 적격 자본적지출에 가속자본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이 2년 내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취득한 기계장치, 중장비 및 일반기계 구입 2. ICT 장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3. 맞춤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자문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최초공제: 20% 연간공제: 40%	**연장 기간** 4년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03

조세인센티브

인센티브 연장

다음은 연장이 발표된 조세인센티브 요약입니다.

조세인센티브 항목		
3.	**엔젤투자자** 프리시드(Pre-seed) 및 시드(Seed) 단계 기술 스타트업의 보통주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에 대하여, 해당 기술 스타트업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개인 합산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연장 기간** 3년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 (참고: 2024년도 예산안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발표하였으나, 관보 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4.	**지분형 크라우드펀딩(ECF)** ECF에 투자하는 거주자 개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합산소득을 소득세 비과세하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대상 금액은 과세연도별 RM50,000을 한도로 합니다. • 공제금액은 과세연도별 합산소득의 10%로 제한합니다. • 투자자, 피투자회사 및 투자금액을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 4년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



04

인지세

외화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상한

현재 외화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에는 SA 1949 제1부칙 제27(a)(ii)항에 따라 0.5%의 종가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종전 RM2,000 상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 은행에서 받은 외화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에 다음과 같이 인지세 상한을 둘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i. 대출 또는 금융액 RM1억까지는 RM2,000. 그리고

ii. 대출 또는 금융액 RM1억 초과는 RM5,000.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체결하는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

PwC 의견

이번 제안은 말레이시아 내 은행에서 받는 대규모 외화 금융의 인지세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종전 RM2,000 상한을 다시 도입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새 상한은 종전 제도와 다음 두 가지가 다릅니다.

- 범위가 좁습니다. 상한은 말레이시아 내 은행에서 받는 금융에만 적용합니다.
- 상한이 두 단계입니다. 금융액 RM1억까지는 RM2,000, RM1억 초과는 RM5,000입니다.

04

인지세

중견기업(MTCs) 대출약정서

중견기업(MTCs)의 협력업체 금융 프로그램은 역팩토링 구조이며, 중견기업(MTCs)과 금융기관 사이에 두 건의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 신용한도 약정서(1차). 그리고
- 초과 신용한도 이용 약정서(2차).

두 약정서에는 통상 0.5%의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중견기업(MTCs)의 초과 신용한도에서 조기 지급을 받아 중소·영세기업(MSMEs)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 **2차 약정서**에 RM10을 초과하는 인지세를 감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영세기업(MSMEs) 협력업체가 중견기업(MTC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이행하였을 것. 그리고
- 중소·영세기업(MSMEs) 협력업체가 중견기업(MTCs)의 모회사·자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아닐 것.

1차 약정서의 인지세는 0.5% 종가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시행일: MTCs와 금융기관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는 2차 약정서)

04

인지세

면제·감면

현행	제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말레이시아 국적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가격 RM500,000까지:** **인지세 100% 면제**를 대출약정서와 소유권 이전 증서에 적용합니다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된 대출약정서 및 소유권 이전 증서 .	말레이시아 국적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약정서와 소유권 이전 증서의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면제합니다. • **100% 면제**: 주택 가격의 **최초 RM500,000** 부분. 그리고 • **50% 면제**: 주택 가격 중 **RM500,000 초과 RM750,000까지의 부분**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된 대출약정서 및 소유권 이전 증서.

04

인지세

면제·감면(계속)

현행	제안
방치된 주택사업 재개	
방치된 주택사업 재개에 인지세 100% 면제를 적용합니다. 대상은 주택지방정부부가 확인한 사업이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원매수인 또는 수익자:** • 재개된 주택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약정서. 그리고 • 재개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 **ii. 사업 인수 시공사 또는 개발사:** • 재개된 방치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약정서. 그리고 • 재개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 시행일: 201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한 적격 증서.	다음에 인지세 100% 면제를 다시 도입합니다. • 대출약정서. 그리고 • 소유권 이전 증서, 주택지방정부부가 확인한 방치 주택사업 재개와 관련하여 사업 인수 시공사·개발사와 원매수인이 작성한 증서입니다.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한 적격 증서.

04

인지세

면제·감면(계속)

현행	제안
CAKNA 제도 대출 또는 금융	
CAKNA 제도는 정부 계약을 수주한 중소·영세기업(MSMEs)과 소규모 시공사에 금융을 제공합니다. 중소·영세기업(MSMEs)과 소규모 시공사가 체결한 주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에 RM10을 초과하는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CAKNA I**(승인된 송장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완료된 정부 계약 대금을 중소·영세기업(MSMEs)이 조기에 받도록 지원)**:** 2021년 3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약정서. **CAKNA II**(RM150만 이하 정부 계약의 적기 이행과 완료에 필요한 자금을 소규모 시공사가 조달하도록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약정서	중소·영세기업(MSMEs)과 소규모 시공사가 체결한 CAKNA 제도 주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의 RM10 초과 인지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CAKNA I:** 2029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주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에 **2년** 연장 **CAKNA II:**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주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에 재도입(주)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CAKNA II 약정서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04

인지세

면제·감면(계속)

현행	제안
P2P 플랫폼을 통한 금융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 등록된 운영자가 운영하는 P2P 플랫폼을 통하여 중소·영세기업(MSMEs)이 작성하거나, 중소·영세기업(MSMEs)과 투자자 또는 투자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투자증서 또는 이슬람 투자증서에는 인지세를 100% 면제합니다.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한 투자증서 또는 이슬람 투자증서.	중소·영세기업(MSMEs)과 투자자가 P2P 플랫폼을 통하여 체결하는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에 RM10을 초과하는 인지세를 감면합니다.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대출 또는 금융 약정서.

04

인지세

면제·감면(계속)

현행	제안
예금계좌 및 당좌계좌 개설	
특정한 법적 의무, 배상책임, 보증 또는 책임을 발생시키는 약정을 담은 예금계좌 및 당좌계좌 개설 증서에는 RM10의 정액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예금계좌 및 당좌계좌 개설을 위하여 작성한 해당 증서에 인지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PwC 의견

이번 인지세 면제안은 특히 금융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계좌 개설 시 신청서, 지명서 또는 특정 약관에 대한 동의서 등 여러 문서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의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신탁, 단체, 법인이 포함되는지가 그렇습니다.



05

간접세

제조업자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업자의 판매세 환급제도

현행

현재 제조업자는「2018년 판매세(납부면제자) 명령」제A부칙 제55항에 따라 기계장치, 부품 및 장비에 판매세를 면제받습니다.

의약품, 사료, 비료 및 농약 제조업자는 같은 명령 제B부칙에 열거된 승인 투입재에 판매세를 면제받습니다.

이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제조업자가 해당 재화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 등록 제조업자, 보세제조창고, 보세창고 또는 자유지역에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현재 제조업자가 이러한 투입재, 기계장치, 부품 또는 장비를 국내 중간판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는 판매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제안

제조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판매세를 납부한 국내 중간판매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판매세 환급제도를 적용합니다.

- 「2018년 판매세(납부면제자) 명령」제A부칙 제55항에 따른 기계장치, 부품 및 장비. 그리고
- 「2018년 판매세(납부면제자) 명령」제B부칙에 따른 의약품, 사료, 비료 및 농약 제조용 투입재.

(시행일: 2027년 1월 1일)

PwC 의견

제안된 판매세 면제는 말레이시아의 사업비용을 낮추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제조업자의 비용 절감이 재화 가격 인하로 고객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05

간접세

노인요양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 처리

서비스세 분류 및 세율	
현행	**제안**
노인요양 서비스는 「2018년 서비스세 규칙」 제1부칙 C군의 웰니스 센터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8%이고 등록기준금액은 RM500,000입니다.	• 이 서비스를 C군에서 제외하고 I군의 신규 항목으로 신설합니다. • 노인요양센터의 RM500,000 등록기준금액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합니다.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서비스세 면제	
현행	**제안**
현행 제도에는 별도 면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1993년 돌봄시설법」 또는 「2018년 민간 노인의료시설 및 서비스법」에 따라 등록한 노인요양센터 서비스 제공자: • 1인당 연간 요양비 RM96,000까지 면제 • 1인당 연간 요양비 RM96,000 초과분에는 6% 적용 (시행일: 2027년 1월 1일)

PwC 의견

I군에 포함하는 제안은 과세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노인요양 서비스의 서비스세율 인하와 서비스세 면제는 노인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05

간접세

랑카위산 물품 수입관세 면제 개정

현재 랑카위를 원산지로 하는 적격 물품을 주 관세구역으로 직접 반입하는 수입자는「2017년 관세(면제) 명령」제76항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받습니다.

현행 목록은 23개 품목이며, 다음과 같이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면제 물품	
현행	**제안**
1. 해삼 추출물 2. 숫돌 3. 과일 4. 멸치 5. 코프라 6. 목탄 7. 맹그로브 목재 8. 제재 고무나무재 9. 코코넛 10. 수공예품 11. 꿀 12. 대리석 13. 해삼 약용 페이스트 14. 해삼 약용 환 15. 멸치 가공제품 16. 건조 가오리 제품 17. 채소 18. 커피 분말 19. 시멘트 20. 사탕수수 21. 달걀 22. 가금란 23. 가금류	**농업 및 농식품** 1. 가금란 2. 코코넛 3. 과일 4. 사탕수수 5. 채소 6. 가금류 7. 버진 코코넛오일 **식음료 제품** 1. 커피 제품 2. 생수 3. 파인애플 타르트 4. 코코넛 쿠키 5. 랑카위산 초콜릿 6. 커리 퍼프 7. 칩류 8. 버팔로 우유 아이스크림 9. 레토르트 제품

05

간접세

랑카위산 물품 수입관세 면제 개정(계속)

면제 물품	
현행	**제안**
(계속)	(계속) **수산물 및 해양제품** 1. 멸치 2. 멸치 가공제품 3. 건조 가오리 제품 4. 해삼 가공제품 **광물 및 장식품** 1. 수공예품 2. 크리스털 제품 3. 찬합(tiffin carrier) **소비재 및 가정용품** 1. 수제 비누 2. 버진 코코넛오일 비누 3. 숫돌 **임산물 및 건설자재** 1. 목탄 2. 시멘트 3. 대리석 (시행일: 2027년 1월 1일)

PwC 의견

수입관세 면제 대상 품목의 확대는 랑카위 지역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5

간접세

랑카위·라부안 방문객 및 관광객 면세물품 구매한도 인상

현행

현재 면세 도서(島)에서 주 관세구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관광객 또는 방문객은 「2017년 관세(면제) 명령」과 「2018년 판매세(납부면제자)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입관세 및 판매세를 면제받습니다.

수입관세	• 물품은 해당 도서에서 구입하고 본인의 수하물로 운반해야 합니다. • 면제 범위는 주류 1리터까지, 새 의류 세 점까지, 새 신발 한 켤레까지, 조제식품 RM150까지, 그 밖의 모든 물품 RM1,000까지이며, 정해진 제외 품목이 있습니다. • 최소 체류기간은 라부안 또는 팡코르(Pangkor)가 24시간, 랑카위 또는 티오만(Tioman)이 48시간입니다.
판매세	• 물품은 본인의 수하물로 운반해야 합니다. • 면제 범위는 주류 1리터까지, 새 의류 세 점까지, 새 신발 한 켤레까지, 조제식품 RM150까지, 개인 위생·관리용 휴대 전기 또는 배터리 기기 한 개, 그 밖의 모든 물품 RM1,000까지이며, 정해진 제외 품목이 있습니다. • 최소 체류기간은 라부안 또는 팡코르(Pangkor)가 24시간, 랑카위 또는 티오만(Tioman)이 48시간입니다.

05

간접세

랑카위·라부안 방문객 및 관광객 면세물품 구매한도 인상 (계속)

제안

- 랑카위·라부안에서 주 관세구역으로 반출하는 신품의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한도를 **RM10,000으로 확대합니다**.
- 제안된 RM10,000 한도는 타이어 및 튜브, 주류, 담배, 담배제품, 흡연용 파이프, 전자담배 및 베이프(액상 또는 젤 포함)를 제외한 모든 신품에 적용합니다.
- 최소 체류기간은 랑카위와 라부안 모두 **48시간**으로 합니다.
- 티오만(Tioman), 팡코르(Pangkor) 및 Forest City의 Pulau 1에 대한 현행 규정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시행일: 2027년 1월 1일)

PwC 의견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품목별 세부 한도(예: 의류 3벌, 신발 1켤레, 식품 RM150 등)를 폐지하고, 최소 48시간 체류 시 1회 방문당 RM10,000의 일괄적인 면세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면세 한도 확대를 통해 랑카위 및 라부안에서 방문객의 소매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5

간접세

연방직할구역의 오락세 면제 개정

「1953년 오락세법」(Entertainments Duty Act 1953)상 일반 오락세율은 입장료의 25%이며, 연방직할구역 또는 주정부가 적용하는 다양한 감면·면제를 반영한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구분	면제 후 세율(현행)	면제 후 세율(제안)
외국 아티스트 무대공연, 라이트쇼, 서커스	10% (2028년 12월 31일까지)	10% (2030년 12월 31일까지)
영화 상영(영화관), 극장		
전시회, 동물원, 수족관		
스포츠 경기, e스포츠, 볼링, 스누커, 포켓볼, 당구, 노래방		
연방직할지에서 개최하는 국내 영화 상영(영화관) 및 국내 극장 공연	10% (2028년 12월 31일까지)	MOF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는 신청분에 4년간 전액 면제
테마파크, 가족휴양센터, 실내 오락시설, 시뮬레이터	5% (2028년 12월 31일까지)	5%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아티스트 무대공연	0% (2028년 12월 31일까지)	0% (2030년 12월 31일까지)

PwC 의견

이번 면제는 국내 영화 상영(영화관)과 국내 극장 공연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05

간접세

연방직할구역 내 지정 시설에 대한 오락세 면제

현행

연방직할구역 내 특정 시설에서 개최되는 예술·문화 행사,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입장료에 오락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승인 시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kit Jalil 국립스포츠컴플렉스(TM 국립경기장, Unifi 아레나, 국립하키경기장 포함).
- Juara 경기장(Bukit Kiara 스포츠컴플렉스)
- Istana Budaya
- 국립미술관
- Dewan Filharmonik PETRONAS

제안

오락세 면제를 Stadium Merdeka와 Stadium Negara에서 열리는 예술·문화 행사, 공연 및 체육 활동까지 확대합니다.

(시행일: 2027년 1월 1일)

PwC 의견

이번 오락세 면제 확대는 Stadium Merdeka 및 Stadium Negara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개최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어 풀이

약어	풀이
ACA	가속자본공제
CA	자본공제
EV	전기차
GITA	녹색투자 세액공제
GSH	글로벌 서비스 허브
ICT	정보통신기술
IRB	국세청
ITA 1967	1967년 소득세법
MFO	멀티 패밀리오피스
MGTC	말레이시아 녹색기술·기후변화공사
MIDA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MOE	교육부
MOF	재무부
MSMEs	중소·영세기업
PTPTN	Perbadanan Tabung Pendidikan Tinggi Nasional(국가 고등교육기금공단)
QCE	적격 자본적지출
SC	증권위원회
SA 1949	1949년 인지세법
SFO	싱글 패밀리오피스
SI	법정소득
SME Corp	말레이시아 중소기업공사
SOCSO	사회보장기구
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TVET	직업기술교육훈련
YA	과세연도

PwC 말레이시아 2027년도 예산안 세미나

쿠알라룸푸르

지금 등록

일자	2026년 10월 27일 (화)
시간	오전 8:00–오후 5:45
장소	Kuala Lumpur Convention Centre
문의	Fazlina Jaafar / Hayley Sek +60(3) 2173 3830 / +60(3) 2173 0121
이메일	my_events@pwc.com

조호르

지금 등록

일자	2026년 10월 29일 (목)
시간	오전 8:00–오후 5:45
장소	Renaissance Hotel, 조호르바루
문의	Hanisah Azman / Najiha Ariffin +60(7) 218 6000
이메일	my_sro_event@pwc.com

페낭

지금 등록

일자	2026년 11월 12일 (목)
시간	오전 8:00–오후 5:45
장소	Eastern & Oriental Hotel, 페낭
문의	Ann Yew Siew Lay / Nurnatasya Rahim +60(4) 238 9291 / +60(4) 238 9148
이메일	siew.lay.yew@pwc.com / nurnatasya.rahim@pwc.com

말레이시아 세무 안내서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세무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필요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세무 안내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세무 안내서」는 말레이시아 세법과 현행 실무, 당국이 제안한 조치를 정리한 실무 참고서입니다. 2026년 10월 9일 발표된 2027년도 예산안 제안도 반영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해당 주제의 일반 안내를 제공하며, 개별 상황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Contacts

사무소

쿠알라룸푸르

Steve Chia
steve.chia.siang.hai@pwc.com
+60(3) 2173 1572

페낭·이포

Kang Gaik Hong
gaik.hong.kang@pwc.com
+60(4) 238 9225

Nur Diyana Ahmad Fauzi
nur.diyana.ahmad.fauzi@pwc.com
+60(4) 238 9230

조호르바루·말라카

Benedict Francis
benedict.francis@pwc.com
+60(7) 218 6000

쿠칭

Lee Yuien Siang
yuien.siang.lee@pwc.com
+60(82) 52 7218

Keegan Ong
keegan.sk.ong@pwc.com
+60(3) 2173 1684

라부안

Jennifer Chang
jennifer.chang@pwc.com
+60(3) 2173 1828

법인세 신고 및 자문

소비재·산업재 서비스

Margaret Lee
margaret.lee.seet.cheng@pwc.com
+60(3) 2173 1501

Steve Chia
steve.chia.siang.hai@pwc.com
+60(3) 2173 1572

Clifford Yap
clifford.eng.hong.yap@pwc.com
+60(3) 2173 1446

Taariq Murad
taariq.murad@pwc.com
+60(3) 2173 1580

Hee Sien Yian
sien.yian.hee@pwc.com
+60(3) 2173 0222

Cynthia Ng
cynthia.hh.ng@pwc.com
+60(3) 2173 1438

Alvin Woo
alvin.jm.woo@pwc.com
+60(3) 2173 1820

Emily Yew
lock.ling.yew@pwc.com
+60(3) 2173 0363

Lim Yih Shuin
yih.shuin.lim@pwc.com
+60(3) 2173 0916

Zaim Zulkifli
wan.zaim.zulkifli@pwc.com
+60(3) 2173 0895

신흥시장

Fung Mei Lin
mei.lin.fung@pwc.com
+60(3) 2173 1505

Michelle Chuo
michelle.sy.chuo@pwc.com
+60(3) 2173 1289

서비스·인프라

Lim Phaik Hoon
phaik.hoon.lim@pwc.com
+60(3) 2173 1535

금융업

Jennifer Chang
jennifer.chang@pwc.com
+60(3) 2173 1828

Lim Phaik Hoon
phaik.hoon.lim@pwc.com
+60(3) 2173 1535

Lorraine Yeoh
lorraine.yeoh@pwc.com
+60(3) 2173 1499

Tan Tien Yee
tien.yee.tan@pwc.com
+60(3) 2173 1584

Serena Lim
serena.l.lim@pwc.com
+60(3) 2173 3862

에너지·유틸리티·광업, 기술·미디어·통신

Heather Khoo
heather.khoo@pwc.com
+60(3) 2173 1636

Lavindran Sandragasu
lavindran.sandragasu@pwc.com
+60(3) 2173 1494

Keegan Ong
keegan.sk.ong@pwc.com
+60(3) 2173 1684

Ang Wei Liang
wei.liang.ang@pwc.com
+60(3) 2173 1597

Aurobindo Ponniah
aurobindo.ponniah@pwc.com
+60(3) 2173 3771

Zarina Othman
zarina.sheikh.othman@pwc.com
+60(3) 2173 1615

Shalini Sathiveil
shalini.s.sathiveil@pwc.com
+60(3) 2173 0343

Contacts (계속)

전문 서비스

자본투자 및 녹색 인센티브
Richard Baker
richard.baker@pwc.com
+60(3) 2173 0644

China Desk
Lorraine Yeoh
lorraine.yeoh@pwc.com
+60(3) 2173 1499

기업 서비스
Lee Shuk Yee
shuk.yee.x.lee@pwc.com
+60(3) 2173 1626

기업 지원 서비스
Mohd Haizam Abdul Aziz
mohd.haizam.abdul.aziz@pwc.com
+60(3) 2173 5355

분쟁해결
Tai Weng Hoe
weng.hoe.tai@pwc.com
+60(3) 2173 1600

Chris Tay
christopher.h.tay@pwc.com
+60(3) 2173 1143

간접세
Raja Kumaran
raja.kumaran@pwc.com
+60(3) 2173 1701

Abd Gani Othman
abdgani.othman@pwc.com
+60(3) 2173 1648

Geeta Balakrishnan
geeta.b.balakrishnan@pwc.com
+60(3) 2173 1652

Annie Thomas
annie.thomas@pwc.com
+60(3) 2173 3539

개인소득세
Michelle Chuo
michelle.sy.chuo@pwc.com
+60(3) 2173 1289

국제조세 서비스 / 인수합병

Gan Pei Tze
pei.tze.gan@pwc.com
+60(3) 2173 3297

Lim Chee Keong
chee.keong.lim@pwc.com
+60(3) 2173 0639

Lee Boon Siew
boon.l.lee@pwc.com
+60(3) 2173 0932

일본기업 자문
Yuichi Sugiyama
yuichi.sugiyama@pwc.com
+60(3) 2173 1191

Keegan Ong
keegan.sk.ong@pwc.com
+60(3) 2173 1684

한국기업 자문
Keegan Ong
keegan.sk.ong@pwc.com
+60(3) 2173 1684

손한희 (HanHee Son)
hanhee.s.son@pwc.com
+60(3) 2173 0625

신규법
Anushia Soosaipillai
anushia.joan.soosaipillai@pwc.com
+60(3) 2173 1419

세무보고 및 전략
Lavindran Sandragasu
lavindran.sandragasu@pwc.com
+60(3) 2173 1494

Pauline Lum
pauline.ml.lum@pwc.com
+60(3) 2173 1059

Mohd Haizam Abdul Aziz
mohd.haizam.abdul.aziz@pwc.com
+60(3) 2173 5355

세무 기술
Yap Sau Shiung
sau.shiung.yap@pwc.com
+60(3) 2173 1555

Joey Chong
joey.chong@pwc.com
+60(3) 2173 0092

인사·노무 세무
Kartina Abdul Latif
kartina.a.latif@pwc.com
+60(3) 2173 0153

Mohammad Iesa Morshidi
iesa.morshidi@pwc.com
+60(3) 2173 3136

국제통상 서비스
Chandrasegaran Perumal
chandrasegaran.perumal@pwc.com
+60(3) 2173 3724

이전가격
Anushia Soosaipillai
anushia.joan.soosaipillai@pwc.com
+60(3) 2173 1419

Jagdev Singh
jagdev.singh@pwc.com
+60(3) 2173 1469

Desmond Goh
desmond.goh.keng.hong@pwc.com
+60(3) 2173 1439

Lim Ying Tian
ying.tian.lim@pwc.com
+60(3) 2173 0291

Ong Ai Ling
ai.ling.ong@pwc.com
+60 (3) 2173 0711

Lilia Edlina Azmi
lilia.edlina.azmi@pwc.com
+60(3) 2173 1498

Dave Law
dave.l.law@pwc.com
+60(3) 2173 0614

Tax in Motion은 PricewaterhouseCoopers Taxation Services Sdn Bhd가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이 소식지를 작성하면서 주의를 기울였으나, 수록 정보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에 관하여 어떠한 목적에서도 명시하거나 묵시하는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PricewaterhouseCoopers Taxation Services Sdn Bhd와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은 이 발간물에 수록된 정보에 의존하여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결과, 또는 그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령인께서는 각자의 상황, 요구사항 또는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으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2026 PricewaterhouseCoopers Taxation Services Sdn Bhd. All rights reserved.「PricewaterhouseCoopers」또는「PwC」는 말레이시아 PricewaterhouseCoopers 조직의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며, 각 구성원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wc.com/structur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